

# ●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일부개정 2005.5.26 대통령령 18837호]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 (목적)** 이 영은 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 
(개정 2005.5.26)

## 제2장 행정 및 재정지원

**제2조 (행정지원의 내용등)**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「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는 그 지방이양을 완료하기 전 30일까지 행정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.  
(개정 2005.5.26)
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지원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업무처리요령 및 절차등을 설명한 업무편람의 제공
  2. 관계법령에 대한 질의회신 자료집의 제공
  3.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
  4.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관련통계 자료의 제공

③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사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정원의 책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3조 (재정지원의 범위 및 협의등)**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양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되, 그 사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양완료후 최단시일내에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지방이양을 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1. 이양사무의 내용 및 단위사무별 처리과정 또는 절차와 이양범위
2. 이양사무의 최근 3년간의 처리실적 및 재원별·사무내용별 소요비용
3. 재정지원의 규모·방법·시기와 각급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내역
4. 재정지원 소요비용의 조달방안
5. 기타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

③행정자치부장관이 법 제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전체

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정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의견을 듣는 것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.

**제4조 (재정지원협의기구의 구성)** ①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재정지원협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협의기구의 구성·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
## 제3장 지방이양추진위원회

**제5조 (위원장의 직무)** 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**제6조 (위원회 구성등)** ①법 제8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”이라 함은 행정자치부장관·기획예산처장관·국무조정실장·법제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 이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.

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,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
2.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

장이 지시하는 사항

**제7조 (회의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과 위원이 아닌 특별시장·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8조 (위원의 회피)**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**제9조 (실무위원회의 구성등)**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는 15인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. (개정 2005.5.26)

②실무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③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위원회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.

④실무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인 위원은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소속공

무원, 안전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5인이내의 공무원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시·군·자치구 소속공무원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추천하는 4인이내의 공무원이 된다. <개정 2005.5.26>

⑤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사전 검토·조정
2.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의 전문적인 조사·연구
3.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
⑥실무위원회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
- ⑦삭제 <2005.5.26>
- ⑧삭제 <2005.5.26>
- ⑨삭제 <2005.5.26>

**제10조 (전문요원등)**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요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회의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②전문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③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이양지원팀을 둘 수 있다.

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지원팀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 및 관계연구단체등의 직원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자로 구성한다.

**제11조 (관계행정기관에의 협조요청등)**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·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.

**제12조 (이해관계인들의 출석요구등)** ① 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·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**제13조 (소속공무원등의 출석통지)**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

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 (수당등)** ①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·실무위원과 전문요원·이해관계인·참고인 및 관계공무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위원회의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·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운영세칙)**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**제4장 지방이양대상사무등의 조사·확정절차등**

**제16조 (기본계획의 수립등)** 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**제17조 (사무조사추진지침의 작성)**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대상사무등의 사무조사추진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

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조사추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기본방향
2. 중점적으로 조사·발굴할 지방이양대상 분야
3. 지방이양대상사무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
4. 기타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 및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18조 (의견조사 방법등)** 위원회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대상사무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일한 내용이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체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적정수의 지방자치단체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**제19조 (이양제외 사유의 통보등)** ①위원회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을 이양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제외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결정사유를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서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아울러 기재하여야 한다.

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

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미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다시 중앙행정기관으로 환원하는 결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26>

- 1. 환원대상사무의 개요
- 2. 환원이 필요한 사유
- 3. 환원대상사무로 결정될 경우 향후 조치하여야 할 사항
- 4. 환원결정시의 기대효과
- 5. 기타 위원회의 환원결정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

③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원결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5.26>

**제5장 지방이양등의 사후관리**

**제20조 (이행계획의 제출등)**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이양 또는 환원결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로부터 그 결정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지방이양 또는 환원 대상사무등의 목록
  - 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각 사무별 지방이양 또는 환원조치 완료계획
  - 3.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
-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

양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행계획을 검토한 결과 지방이양등의 이행조치기한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그 이행조치기한등을 조정할 수 있다.

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의 개정등 지방이양등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대상사무별 지방이양 또는 환원결정의 내용
- 2. 대상사무별 조치내용
- 3. 수정되었거나 일부에 대하여만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

**제21조 (건의에 대한 조치)** 국무총리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로부터 관계법령의 개정등의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건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**제22조 (재심사 요청등)**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일, 재심사 대상사무의 개요, 위원회의 결정내용 및 재심사 요청사유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법 제21조제2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”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.

- 1. 안건 심의과정에서 지방이양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 간과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
- 2. 위원회의 결정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23조 (추진실태의 점검등)** ①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·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와 지방이양사무등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, 점검결과 그 이행실적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촉구하거나 시정조치등을 권고할 수 있다.

②위원회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행여부, 행정·재정상의 조치상황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회로부터 보고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5.26>

- 1. 행정·재정상의 조치내용
- 2. 미조치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
- 3. 기타 위원회가 정한 사항에 관한 보고

**부칙 <제16486호, 1999.7.29>**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지방이양지원팀의 존속기한)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양지원팀은 200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. <개정 2003.11.27>

**부칙 <제18142호, 2003.11.27>**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칙 <제18837호, 2005.5.26>**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